

포르투갈 언론관계법 ②

포르투갈 「출판법」 - 상 -

본고는 외국의 언론관계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 프랑스의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한 해설(1985년 봄호), 오스트리아의 「언론법」(1988년 가을호), 영국의 「반론권에 대한 법률」(안)의 「언론위원회법」(1989년 겨울호) 등을 번역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호부터는 포르투갈의 2개 언론관계법 중 출판법을 2개 언론관계법 중 출판법을 2회에 걸쳐 나누어 게재할 예정입니다.

이 출판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 최영수 교수께서 번역하였습니다. 편집자 주

요약

사회통신성

법령번호: 85-C/75

출판법을 공포한다

법령번호: 85-D /75

일간지 또는 월 2회 정기발행되는 비일간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신문에 관한 규정은 국회에 개진된 다양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통해 제정된다.

사회통신성

법령번호: 85-C/75, 2월 26일

1. 현행 출판법은 그 체제나 목적에 있어 현재 포르투갈의 정치적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여타사회 통신매체뿐만 아니라 출판물을 통한 사상표현의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란 상상하기 불가능하다. 다른 많은 자유와 마찬가지로 이 자유도 4월 25일의 역사적 승리(역주: 1974년 4월 25일의 군사혁명을 말함)로 인해 포르투갈 국민에게 되돌려졌다. 한편 본 법령은 정보에 대한 권리에 통합되어 있는 출판물에 의한 사상표현의 자유를 완벽하게 보장하며, 포르투갈 신문을 유지해온 과도기적 상황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2. 포르투갈에서는 4월 25일을 시점으로 하여 출판의 자유가 신문기자, 문인, 국민 및 애국민주세력의 열망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헌법상의 힘을 갖는 MF. A(포르투갈 군부운동: 4.25 혁명을 주도한 영관급 장교들의 모임)의 계획은 모든 사전검열의 폐지를 통해 현 출판법의 기본원칙들을 공식화하고 모든 기본적인 자유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다양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이 법령의 빠른 제도화를 위한 기반을 설립하였다. 따라서 신문기자와 문인들은 정보의 획일주의와 문맹주의 그리고 문화에 대한 속박이라는 길고도 극적인 기간(역주: 4.25 혁명전의 Salazar 독재체제기간) 이후에 획득한 자유의 특권을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창조적 행위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3. 상기 M.F.A의 계획에서 예고된 본 법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관한 법규의 제정은 후일로 미루면서 출판물을 통한 사상표현에 관한 자유를 모든 면에서 제도화하고 있다. 이는 포르투갈에서 민주적 절차의 발전을 확고히 할 목적으로 국가적인 문제의 공포와 토론,

그리고 정보와 사상의 유통이라는 정상적인 사명에 모든 출판물을 통합하여 다루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출판물에는 어떠한 제한이나 혹은 행정적인 처벌규정이 없이 정보를 전달할 광범위한 권한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는 정보의 수취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보장된다. 신문사 및 신문기자 규정도 역시 그 범위를 정한다. 독립기관으로서의 출판기관과 포르투갈여론의 대표자들이 모여 구성되는 신문평의회창설은 특별히 고려될 가치가 있다. 본 법령의 항목 중 많은 부분은 솔직하게 말해 비교입법안에서도 혁신적인 것들이다.

4. 실제로 이 법안은 최근의 유익한 현실을 만족시킬 것이며 또한 4월 25일에 회복된 자유의 경험인 것이다. 사실 국가의 정치생명을 열어놓은 새로운 시대는 책임있는 신문, 방송의 실천으로 나타나며 이는 우리나라를 진취적으로 이끌고 나갈 것이다. 본 법령은 정보에 대한 권리의 가장 방대한 영역에서 출판물에 의한 사상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민주주의의 실천과 공공의 자유를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으며, 국가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책임있는 행동을 위해 노력하는 포르투갈 기자들을 통합시킬 기구를 설립한다.

제 1 장 출판의 자유와 정보에 대한 권리

제 1 조(정보에 대한 권리)

자유롭고 다양한 정보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속에 포괄되어 있는 출판물에 의한 사상표현의 자유는 우리나라에 있어 민주주의의 실현, 평화수호, 그리고 정치, 사회 및 경제적 발전에 필수적인 것이다.

2. 정보에 대한 권리는 정보를 알릴 권리와 정보를 수취할 권리를 내포한다.
3. 출판물에 의해 정보를 알릴 권리는 사상표현의 자유 이외에도 다음사항을 포괄한다.
 - a) 정보의 공식적인 정보원에 접근할 자유,
 - b) 직업상 비밀의 보장,
 - c) 출판과 방송의 자유,
 - d) 경영의 자유,
 - e) 경쟁의 자유,
 - f) 기자의 직업적 독립성과 신문, 출판의 방 설정에 있어 참여 보장,
4. 정보를 수취할 국민의 권리는 특히 다음의 규정에 의해 보장된다.
 - a) 독점방지적인 방법을 통해서,
 - b) 편집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표한 출판물을 통해서,
 - c) 광고의 확인을 통해서,
 - d) 응답권의 확인을 통해서,
 - e) 신문평의회와의 접촉을 통해서,

제 2 조(출판물의 정의)

1. 사회적인 관계상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공적 인쇄물을 제외하고, 배포를 목적으로 출판된 모든 복제물은 인쇄물로 간주되며, 이는 출판물이라고 지칭된다.
2. 출판물은 정기적일 수도 있고, 혹은 단행본일 수도 있다.

3. 규정된 지속기간과 관계없이, 똑같은 제명하에 오직 과학, 문화, 예술, 체육 혹은 종교적 주제를 다루면서 연속으로 출판되는 출판물은 정기간행물로 간주한다.
4. 단행본은 보통 동질의 내용을 지닌 출판물이며, 전체 분량이나 혹은 권수가 하나로 편집된 출판물이다.
5. 외국에서 출판된 것들과 포르투갈에서 외국편집인의 책임과 등록상표하에 출판된 것은 외국간행물로 간주된다.
6. 포르투갈에 배포된 외국간행물은 성격상 적용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7. 간행물의 배포에 있어서는, 정기간행물은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배포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간행물은 국내에서 배포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3 조(정보 및 학술적인 간행물)

1. 정기간행물은 내용면에 있어 정보지 혹은 학술지일 수 있다.
2. 학술적인 간행물은 주로 정당, 시민단체나 협회 혹은 교회나 종교단체 등 공적 기구의 어떤 주장, 이념 혹은 종교적 신념을 우선적으로 선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물이다.
3. 전 항에서 언급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간행물은 정보지이다.
4. 정보지는 편집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편집 규정은 출판물의 도의적 원칙과 직업윤리를 보장할 수 있게 함은 물론, 단지 상업적인 목적을 추구하지 않으며 또한 정보를 은닉하거나 변질시켜 독자의 믿음을 왜곡하지 않게 하기 위해 지도 및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5. 편집규정은 경영명세서 그리고 보고서와 함께, 규정에 어떤 변경사항이 있을 때면 항상 간행물에 게재한다.
6. 정보지는 전문화된 정보지나 일반 정보지가 될 수 있다.
7. 주로 한 가지 사항, 특히 과학, 문학, 예술, 체육 혹은 종교 등을 다루는 것을 전문 정보간행물로 간주한다.
8. 본 조의 2 항과 7 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성격의 뉴스와 정보게재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일반 정보간행물이다.

제 4 조(출판의 자유)

1. 출판물에 의한 사상표현의 자유는 어떤 형태의 검열, 인가, 경계 혹은 사전 적부판정 등에 구애됨이 없이 행사된다.
2. 출판의 자유는 국민의 도덕적 청렴성을 보호하고 정보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보장하며 공공의 이익과 민주적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본 법령과 일반법 그리고 군법이 부과하는 규정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
3. 정치, 사회 그리고 종교적 이념, 법률과 통치권, 그리고 행정기관의 행위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관에 있는 직원의 처신에 대한 토론과 비판은 본 법령을 통해 적절히 실행되는 한 적법하다.

제 5 조(정보에의 접근과 직업상의 비밀)

1. 정기간행물에 대한 정보원의 접근은 행정부처, 공기업 그리고 규정상 공적인 권리를 가진 단체 구성원의 대다수가 참여하는 기업을 통하여야 용이하며 그리고 사업집행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원칙에 따라 공공 소유의 재산을 개발하거나 혹은 공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기업을 통해 정보의 개발 혹은 양도의 목적에 대한 접근이 용이 하다.

2. 재판의 비밀소송, 관계당국에 의해 국가 혹은 군사적 기밀이라고 간주된 문서 그리고 사건, 또는 법률상으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경우, 1 항에 관계된 기업들의 경쟁적 상황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국민의 사생활에 관계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보접근이 용인되지 않는다.

3. 정보원의 표시가 없을 경우, 쓰여진 글에서 명이 안된 경우엔 항상 그것이 그 정기간행물의 편집장의 것으로 간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글쓰기가 정보원을 얻은 것으로 가정한다.

4. 신문기자는 자신의 정보원을 밝힐 의무가 없고 또한 자신의 묵비권행사로 인해 직접 혹은 간접적인 어떤 처벌과 고통도 당하지 않는다. 회사나 편집장들은 정보원을 알고 있다 해도 이를 밝힐 수 없다.

5. 2 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 6 조(출판과 배포의 자유)

어느 누구도 어떠한 구실과 이유로 여하한 출판물의 편집, 인쇄, 배포 및 자유스러운 발행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압수 혹은 다른 형태로 방해할 수 없다.

제 7 조(기업의 자유)

1. 정기간행물은 이익 목적이 없는 어떤 단계의, 상업적인 형태하의 신문사, 혹은 2 항의 필요사항을 갖춘 개인의 재산이 될 수 있다. 단행본의 출판은 단체이든 개인에 의해서든 자유롭게 장려된다.

2. 외국의 상업, 외교 그리고 문화적 대표기관의 출판물을 제외하고, 포르투갈 극적을 갖고 포르투갈에 거주하며 민법적 그리고 정치적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사람만이 정기간행물의 소유주가 될 수 있다.

3. 어떠한 간행물, 뉴스물, 논평 및 영상의 편성, 출판 그리고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문, 출판 및 보도회사의 설립은, 신원 보증, 사전자격심사 및 본 법령에 기록된 조건이 아닌 다른 조건에 예속됨이 없이 자유롭다.

4. 정기간행물을 출판하는 모든 기업은 신문사로 간주된다. 5. 단행본 출판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출판사로 간주된다.

6. 정기간행물에서 공표하기 위한 뉴스, 논평 및 영상의 취재와 보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보도회사로 간주된다.

7. 신문사, 출판사 그리고 보도회사는 주목적 이외에도 고유의 활동이나 보충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8. 상업회사 형태의 신문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오직 포르투갈 법령에 따를 것이며 포르투갈에 본부를 두어야 함은 물론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한 외국자본은 투표권한이 없고, 10%를 초과할 수 없다.

9. 전체의 1/10 을 초과하는 자본을 외국인이 소유했을 경우 다른 처벌과는 별도로 자본의 등기가 끝난 후 60 일이 경과하면 초과자본은 국가에 귀속된다.

10. 한개의 주식회사에 소속된 정기간행물의 경우 모든 주식은 기명으로 되어야 하며 간행물을 소유한 회사와 연합한 주식회사들에 대해서도 동일 사항은 준수되어야만 한다.
11. 신문사의 경영자나 관리자는 필수적으로 민법상 또, 정치상 온전한 권리를 누리는 국내 사인이어야 한다.
12. 기업이 소유한 모든 정기간행물은 매년 4월에 신문사의 사회적 지분을 점유한 사람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차이를 공표해야 한다.
13. 포르투갈에 본부를 둔 보도회사는 신문사에 관한 법률에 예속된다.

제 8 조(경쟁의 자유와 독점방지 규정)

1. 정기간행물의 대중에 대한 판매가격, 광고가격 및 영리수지는 가격의 일반체제와 소비자의 이윤을 보호하여 적절한 경제균형과 효율적인 경쟁조건을 위주로 신문사의 경영에 의해 설정된다.
2. 특별 법안을 통해 보도회사 및 신문사의 집중현상을 배제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하면서, 이러한 회사가 정당이나 경제집단과는 독립적으로 스스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제 9 조(공공자본에 의한 출판)

국가 혹은 공적인 권한을 가진 여타법인단체가 한 정기간행물이나 최소한 한 신문사의 혹은 신문사와 연합한 회사의 자본의 1/4 을 소유한 경우, 이러한 회사의 규정은 그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게 해야 한다.

제 10 조(신문기자 규정)

1. 다음과 같은 경우 전문적인 신문기자로 간주되며, 전문직에서 준하는 의무가 따르게 된다.
 - a) 신문사 혹은 보도회사와의 계약으로 편집 및 기사작성을 자신의 주 활동으로, 항구적으로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
 - b) 보수를 받고 항상 직접적으로 편집업무에 종사하는 자 비록 편집을 한다 해도 광고 대리인과 일시적으로 업무를 보는 모든 사람을 제외한 장정편집인, 번역편집인, 사진기자.
 - c) 위에서 언급한 회사를 위해 자유롭게, 보수를 받으며, 실제로 신문기자에 준하는 역할을 주 직업으로 수행하는 사람.
 - d) 포르투갈에서든 국외에서든 정해진 보수를 받고 a)호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특파원.
 - e) 외국 신문사의 특파원 임무를 수행하며 이 활동을 주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
2.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항구적으로, 지방에 보급되는 정보출판물이나 전문 정보출판물의 편집에 있어 지도와 감독 혹은 조정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비록 자신의 임무로 보수를 받지 않으며 또한 자신의 주직업이 아니라 해도 직업적인 신문기자에 해당되며 또 그러한 명칭을 의무적으로 갖게 된다.
3. 직업적인 신문기자의 활동행위는 윤리강령과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4. 신문기자규정은 근본적으로 공공당국에 대해 기자활동행위에 관계된 권리를 보장하며, 기자에게 부여된 의무를 규정한다.
5. 신문기자들의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 문교, 노동 그리고 사회통신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에 대한 권한이 정부로부터 위임된다.
 - a) 신문기자 규정을 제정하고 수정하며 그 이행을 감독하도록 하는 것.

b) 기자의 직업적 명칭과 속성에 대한 조건을 정하는 것 .

6. 신문사의 근로자 및 여타 관련 업무 종사자는 공공당국 및 제 3의 당국으로부터 기자의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성에 의해 설치된 신문기자규정에 인정된 권리의 혜택을 받는다.

제 11 조(출판물에 필요한 게재사항)

1. 단행본 출판물은 저자, 편집자, 인쇄장소에 대한 언급과 몇 번째 판인가를 알리는 출판일자 및 발행부수를 명시한다.

2. 정기간행물은 1 면에 간행물 명칭, 일자, 그 간행물의 정기적인 발행주기 그리고 가격을 명시한다. 또한 편집인과 소유자의 이름, 인쇄소와 출판사 및 본사 위치도 명시해야 하지만 반드시 1 면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

제 12 조(법적 예치금)

1. 정기간행물의 편집인과 단행본 출판물의 편집인은 해당 출판물 몇 부를 출판 3 일 후 즉시 등기우편으로 다음에 명시된 기관에 우송해야 한다.

a) 법적으로 발송의 의무가 있는 국립 도서관과 기타 공공도서관,

b) 사회 통신성 도서관,

c) 시립도서관에서 대중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시 행정구의 시의회,

d) 법적으로 발송의 의무가 있는 기타 단체,

2. a)호와 c)호에 관계된 단체들에 발송한 부수들은 이의 수취일로부터 5 일 이내에 대중이 볼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한다.

제 13 조(출판물 등록)

1 정부는 사회통신성을 통해 다음과 같은 등록 규칙을 정한다.

a) 명칭, 주기성, 소재지, 소유단체, 해당 경영 및 관리단체를 표시한 정기간행물,

b) 회 사지 분의 소유자와 그와 구별되는 경영진을 표시한 신문사와 신문사와 연합한 회사,

c) 소재지, 회사지분의 소유자, 그리고 그와 구별되는 경영관리 진을 표시한 국내 보도회사와 이 보도회사와 연합한 회사,

d) 소재지 및 해당 경영진을 표시한 출판사,

e) 소재지, 구성형태 및 포르투갈의 책임자를 표시하고, 포르투갈에서 활동하도록 허가 받은 외국 보도회사,

f) 외국 출판사의 특파원,

2. 전 조항에 규정된 어떤 요소들에 발생한 모든 변경 사항들은 확인이 끝난 후 30 일 이내에 통보되어야 한다.

3.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등록이 효력을 얻기 전에는 신문, 출판 및 보도회사는 그 활동을 시작할 수 없으며, 또한 어떤 정기간행물도 출판될 수 없다.

제 14 조(광고)

1. 특정 개인 혹은 단체가 특정 출판물에 광고문이나 그림을 게재하는 것은 해당 편집인 혹은 이를 대표하는 사람이 편집위원회의 보고를 들은 후, 이 행위가 출판물의 지침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이 광고의 게재행위는 적법하지 않다.

2. 어떤 신문사도 이 신문사와 상이한 출판물에 동일한 광고문이나 그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이유로 이의 게재를 조건지을 수 없다.

3. 편집된 모든 광고 혹은 그래픽 광고는 즉각적으로 확인될 수 없을 경우 그 첫머리에 큰 활자로 <광고>라고 써서 확인가능하게 해야 하며 그래도 불분명할 경우는 광고자의 이름을 명시한다.
4. 정기간행물의 광고가격에 따르지 않았다 해도 대가를 지불하고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모든 내용 혹은 그림은 편집된 광고 혹은 그래픽 광고로 간주된다.
5. 출판물에 의한 위법행위나 법률규정의 수행에 있어 청원된 위법행위와의 상호관계는 독립적으로 사법부에 의해 정해진 소송법에 의거, 통보 및 공고의 공표는 의무적이다.

제 15 조(공적 성격을 띠지 않은 문서의 공표)

1. 일간 정보출판물은 정부가 사회통신성을 통해 발송한 최대 1500 단어로 된 공적 성격을 띠지 않은 문서를 수취 한 후 출판된 두 호 중 한 호에 이를 게재해야 한다.
2. 비일간 정보출판물은 공표를 위해 정부가 공포할 것을 명시하여 발송한 최대 500 단어로 된 공적 성격을 띠지 않은 문서 전체를 전항에 기술한 바와 같이 게재해야 한다.

제 16 조(반론의 권리)

1. 정기간행물은 개인 혹은 공공기관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허위의 혹은 실수적인 사실의 언급이나 직접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동 간행물에 발표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 혹은 공공기관의 반론과 혹은 그 정기간행물에 발표되거나 복제된 기사의 공식적인 취소나 정정을 피해자의 서명과 수취 통보 등을 등기우편으로 받은 때로부터 두번째 호 안에 이를 게재할 의무가 있다.
2. 반론의 권리는 침해를 받은 당사자, 당사자의 법적 대리인, 상속자 혹은 생존 배우자에 의해 문제기사가 보도된 날로부터 일간 혹은 주간 지일 경우 30 일 내에, 그 이외에 주기성이 적은 간행물은 90 일 이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3. 이에 대해 해당출판물은 문제된 기사와 동일한 성격, 동일한 위치에 다른 기사에 의해 끊어지거나 중단됨이 없이 단 한 번에 걸쳐 무료로 게재해야 한다.
4. 반론의 내용은 그 길이가 150 단어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반론을 유발한 글이나 그림과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관계에 의해 제한되며, 반론문의길이가 무례한 표현을 담지 않거나, 민사적, 사법적 책임을 연루시키지 않으면서, 50 단어를 초과할 경우 이는 반론권자에게 그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5. 반론문이 이러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잔여반론 부분은 정기간행물의 페이지 숫자를 매기기에 편리한 위치에, 그리고 간행물의 가격표에 기록된 상업광고의 가격에 해당하는 액수에 따라 발표되며 가격 지불은 사전에 이루어지거나 혹은 충분히 위탁된 금액의 발송에 의해 보증되어질 것이다.
6. 제기된 반론문에 불분명 함이나, 잘못된 설명 혹은 또 다른 반론을 야기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문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보충하여 지적할 한정된 목적으로, 신문은 반론이 게재될 똑같은 호에 문제의 반론에 대한 짚막한 설명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7. 반론이 4 항의 규정에 위배될 경우, 편집위원회의 바람직한 의견을 청취한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은 반론문의 접수 3 일 안에, 발송된 반론문 수취통지를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반론권자에게 보내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8. 반론의 권리는 문제의 보도에 의해 야기된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권에 대해서도 독립적이다.

제 17 조(신문평의회)

1. 정부는 본 법령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문평의회에 의해 선정된 독립적인 기구의 구성을 장려한다. 이 기구는 임시 정부의 통치기간 동안 사회통신성과 함께 임무를 수행한다.

2. 신문평의회는 다음과 같다.

a) 최고사법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법관인 1 인의 회장

b) M.F.A 에 의해 임명된 3 인

c) 해당 직업 단체에 의해 임명된 기자 6 인

d) 각 후원회에 의해 임명된 신문사의 대표자 2 인

e) 각 신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 중에서 각 전문분야 중 사자들의 선임에 의해 임명된 정기간행물 편집인 2 인, 1 인은 일간지 간행물, 다른 1 인은 비일간지 간행물의 편집인

f) 연립정부 정당의 대표위원 6 인

g) 2/3 중 과반수 획득이라는 제도에 따라, 선거를 통해 잔류자들에 의해 공동 선출된 독립적인 위원 4 인

3. 신문평의회구성원의 임기는 각각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4. 신문평의회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으로부터 출판의 자유를 보호할 권한을 갖는다. 5. 전항에서 언급한 바 있는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신문평의회는 여타 역할 중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 한다.

a) 8 조에서 언급한 독점방지법령의 입안에 협력하며 이의 시행에 동조한다.

b) 정보시책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다.

c) 직업상의 비밀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도의적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다.

d) 규정에 따라 출판물의 배포와 인쇄의 통제의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널리 공포한다.

e) 다음 항의 조건에 따라 개인에 의해 제시된 불만사항을 평가한다.

f) 제 23 조 1 항의 조건에 따라 정기간행물의 지침 변경을 확인한다

g) 제 22 조 7 항과 제 3 조의 실행을 위하여 정기간행물을 분류한다.

h) 제 18 조 2 항에서 언급된 재원을 평가한다.

6. 어떤 시민이라도 본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사랑이나 단체 혹은 정기간행물 출판행위에 대해 신문평의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7. 신문평의회는 불만자들의 사항을 경청하고 동 평의회에 제시된 불만을 평가한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정기간행물의 행위를 비난할 경우 정기간행물은 60 일 이내에 설명 없이 그 결정을 공포한다.

8. 신문평의회는 매년 공개적으로 국가자문위원회와 정부의 평가를 위해 제시할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 보고서에는 정보시책의 상황, 출판 잡지 부수, 일간지와 비 일간지의 성격, 출판물에 생긴 변동사항, 출판물의 도의적 행위, 신문사의 집중도와 재정상태, 출판에 대한 위법행위 등을 조사하여 의무적으로 수록해야 한다.

9. 법원은 출판의 위법행위 처리 과정에서 선고된 판결문의 복사본을 신문평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 2 장 신문사의 구성

제 18 조(신문의 편집인)

1. 어떤 정기 간행물도 편집인없이 출판을 시작할 수 없다. 그 편집인의 자격은 완전한 정치적 권한과 시민권을 갖고 있으며, 또 포르투갈국적을 가져야 하며 사기죄로 형을 받지 않은 자이어야 한다.

2. 신문사 소유주에 의해 임명되어 신문평의회에 대해 원조를 담당하는 편집인은 편집위원회가 존속할 경우 이에 대해 투표권을 갖는다.

3. 신문사 소유주는 자유로이 편집인을 면직시킬 수 있다.

4. 편집위원회의 사전청문은 학술출판물, 편집인의 임명과 정보출판물, 편집인의 첫번째 임명 등에 있어서는 배제된다.

제 19 조(편집인의 권한)

제 22 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편집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부여된다.

- a) 정기간행물 내용의 방향 설정, 감독과 결정
- b) 편집위원회 의장
- c) 편집장의 임명 d) 편집인의 권한 문제와 그 직책의 고유기능에 관한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떠한 당국에 대해서도 정기간행물을 대표한다.

제 20 조(부편집인(adjunct director)과 편집인 보좌역(subdirector))

- 1. 편집인은 부편집인과 편집인 보좌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2. 부편집인과 편집인 보좌역에게는 제 18 조의 규정 이 적용된다.
- 3. 문제가 있을 경우, 편집인은 부편집인과 편집인 보좌역을 편집장으로 대치할 수 있다.

제 21 조(편집위원회)

5명 이상의 전문기자를 소유한 정기간행물에는 자신들에 의해 입안된 규정에 따라, 그 정기간행물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전문기자들에 의해 선출된, 전문기자들이 구성한 편집위원회가 있다.

제 22 조(편집위원회의 권한)

편집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권한이 부여된다

- a) 신문사 소유주에 의해 임명된 편집인, 부편집인, 편집인 보좌역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편집인에 의해 선임된 편집부장에 대한 찬성 투표권을 부여 한다.
- b) 정기간행물의 방침결정시 편집인, 부편집인 또는 편집인 보좌역과 서로 협력을 하는 권한
- c) 어떤 형태로든 기자들의 직업활동의 수행과 관련되거나, 그것에 관한 신문의 조직과 생활의 모든 분야에 대해, 결의권과 함께, 입장을 표명하는 권한이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제 10 조 3 항에 명시되어 있다.

d) 전문기자들의 입사, 징계조치와 면직에 대해 의사를 표시할 권한이 있다.

e) 제 16 조 7 항과 제 14 조 1 항의 결과에 대해 의사를 표시하는 권한

제 23 조(정기간행물 방침의 변경)

1. 신문평의회에 의해 확인된 어떤 정기간행물의 방침의 중대한 변경이 실행될 경우, 그에 종사하는 기자들은 일방적인 발의를 통해 업무관계를 철회시킬 수 있으며 사전예고 없이 그리고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2. 전 항에서 언급된 바 있는 업무관계의 철회는 신문평의회를 통해 그 사실이 확인된 이후 30 일 이내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 24 조 (민사책임)

1. 출판물을 통해 범해진 사실로 나타난 민사책임의 이행형태를 결정함에 있어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2. 편집인이나 그의 합법적인 대리인의 이해와 이들의 반대 없이 정기간행물에 게재되고 서명된 글이나 그림의 경우에는 신문사가 저작자와 연대로 책임을 진다.
3. 이에 대한 유죄판결에는 제 54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25 조(출판자유남용죄)

1. 출판자유남용죄는 글 또는 그림의 출판으로 인해, 형사적으로 보호되는 법률상의 권익을 오도한 자는 명예훼손의 행위로 간주된다.
2. 위에서 언급된 죄에는 다음의 특별 조항과 더불어 일반 형사법이 적용된다. a)만일 범죄행위자가 이전에 출판법에 저촉되는 부당한 행위를 통해 어떤 형을 선고 받지 않았다면 어느 경우에든 금고형은 5 만 escudos(역주: 약 230 만원)이상의 벌금으로 대체될 수 있다 b)법원은 그 밖의 다른 경우에는 다양한 혹은 단순한 가중형을 다룰 때 최고 한도의 1 보다 적지 않은 한도에서, 형벌규정에 예시된 형을 적용시킨다.

제 26 조(형사책임)

1. 단행본 출판물에 의한 출판자유 남용 죄는 다음과 같은 자들이 그 책임을 진다
 - a) 그림이나 글의 저작자가 포르투갈에 거주하고 또한 책임을 인정한다면, 합의되지 않은 복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복제를 조장한 사람이 책임진다.
 - b) 만일 저작자가 누구인지 확정 짓기가 불가능하거나 저작자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발행인이 책임진다.
2.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형사책임을 진다.
 - a) 그림이나 글의 저작자가 만일 책임을 인정한다면, 합의되지 않은 복제를 제외하고는, 복제의 경우 복제를 조장한 사람이 책임진다. 그리고 출판된 글이나 그림을 알지 못했다고 증명하지 못하거나 그것의 출판을 금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이나 그 합법적인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 b)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이나 그의 합법적인 대리인은 서명되지 않은 그림이나 글의 경우, 또는 저작자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전 항에서 언급한 방법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지게 된다.
 - c) 편집인이나 그의 합법적인 대리인의 이해 없이 서명되지 않고 출판된 글이나 그림의 경우 또는 이들에게 발행을 막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게재를 맡은 담당자가 책임을 진다.

3. 형사책임의 결과에 대해서는 정기간행물의편집인이 만일 전 항에서 언급한 방법을 통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 서명되지 않은 모든 글의 저작자로 간주되며 범법 행위자로서 책임을 진다.

4. 편집위원회의 구성원들은 동위원회에서 투표로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편집인과 같은 차원에서 책임을 진다. 그러나 그 구성원들이 심의하지 않았거나 그 투표에 반대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5. 기술자, 배급자와 판매자는 절차를 밟지 않아, 압수된 출판물 혹은 사법적으로 정지당한 출판물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사법적 성격을 인지한다 해도 그의 직업 수행에 있어, 인쇄하거나 판매하는 출판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는다.

제 27 조(출판에 대한 위반행위의 성립과 공소)

1. 형법 제 411 조와 제 159 조, 제 160 조, 제 166 조, 제 181 조, 제 182 조에서 언급된 바 있는 죄는 거기에 지적된 바 있는 사람들에 대한 중상, 명예훼손이나 위협이 담긴 글이나 그림의 출판으로 성립된다.

2. 출판을 통해 공공 당국에 대한 중상, 명예훼손이나 위협을 가하는 발표는 이 당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제 28 조(명예훼손, 중상 그리고 범행의 진위여부증명)

1.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 비만이 개인적인 사항을 다루면서 공공의 이익이나 가해자의 이익이 전가된 행위의 누설을 정당화하지 않고 행해지거나, 또는 이러한 것들이 명예가 훼손된 자의 가족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계될 때를 제외하고는 전가된 행위의 진위 여부의 증명이 허용된다.

2. 중상의 경우 전 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진위여부 증명이 허용된다. 단, 글이나 그림의 저자가 그 침해의 기반이 된 행위를 구체화한 후에야 피해자의 청원이 허용된다.

3. 만일 침해를 유발한 저작자가 비방행위의 진위 여부를 증명하여, 받아들여질 경우 이때는 형이 면제된다. 그 반대의 경우, 중상자로서 최고 2년에서 최하 3개월 이상의 금고형의 처벌을 받으며 이 사실은 취소될 수 없다. 그리고 증명에 상관없이 판사가 정하는 50,000 escudos 의 손해배상액 이외에 피해자가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한다면 그것보다 결코 적지 않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액수를 비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4. 만일 명예훼손이나 중상의 피해자가 포르투갈 대통령이나 이와 관련된 외국의 국가원수 혹은 포르투갈에 거주하는 외국의 대표자라면, 비방의 증명을 받아들일 필요 없이 형법 제 410 조의 유일 항목과 제 40 조 본문의 총칙이 적용된다.

5.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은 제 26 조 2 항의 경우범죄자로 처벌을 받으며 그 정기간행물에 25,000escudos(약 115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6. 5년 동안 명예훼손죄나 중상죄로 세번 형을 받은 바 있는 문제가 된 글이나 그림을 출판한 정기간행물은 다음과 같이 발간 정지될 수 있다.

a) 일간지의 경우 1개월까지

b) 주간지의 경우 6개월까지

c) 월간지나 그 이상 기간의 정기간행물인 경우 1년까지.

d) 중파 방송의 경우 최대 정지기간은 전 호에

서 정해진 최대기간을 비율로 환산하면서 계산된다.

7. 출판물 통해 세번의 명예훼손죄나 중상죄의 형을 받은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은 5년 동안 어떤 정기간행물도 편집할 수 없다.

8. 고소가 공적이라면 경찰청의 대리인(agent)은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그가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거절했을 때는 그 배상액은 재무부에 귀속된다.

9. 중상행위나 명예훼손행위의 사실이 단순한 과실로 출판되었고, 동조의 1항과 2항의 조건에 따라 증명되지 않았을 때는 민사배상과는 별도로 최고 50,000escudos의 벌금, 재범의 경우 100,000escudos(약 460만원)까지의 벌금이 그림이나 글의 책임자에게 적용된다.

10. 허위 기사나 유언비어는 민주질서나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것을 겨냥한 행위로 공소의 경우가 되는 바, 유언비어나 허위기사의 의도적인 출판은 명예훼손죄와 상응하는 형벌을 받는다. 그러한 경우에는 항상 행위의 사실 여부의 입증은 허용된다.

제 29 조 (특별처벌)

1. 신문사, 출판사와 보도회사의 출판물 혹은 기사가 위법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법원은 50,000escudos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문제가 되는 글이나 그림을 발간한 정기간행물이 5년 동안 2년 이상의 금고형과 더불어 위법한 행위로 세 번의 형을 언도받았을 때는 다음과 같이 발간이 정지될 수 있다.

a) 일간지의 경우 1개월까지

b) 주간지의 경우 6개월까지

c) 월간지 또는 그 이상 기간의 정기간행물인 경우 1년까지 d)중파 방송의 경우 최대 방송정지기간은 전호에서 정해진 최대 기간을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된다.

3. 문제가 되는 글이나 그림이 발간된 정기간행물이 5년 동안 어떤 형태의 위법행위로 다섯번 형을 언도받았을 때, 전항과 같은 한도로 발간정지될 수 있으며, 거기서 확정된 최고형은 1/3로 감형될 수도 있다.

4. 8년 동안 다음과 같은 위반으로 두 번 형을 받은, 문제가 되는 글이나 그림을 발행한 바 있는 정기간행물지에게 50,000escudos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a) 군대규정이나 군법에 대한 무례한 행위를 포함하여 군대에 간접적으로 항명했다 할지라도 이 사실이 선동이나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b) 군 합참의장이 허용한 바 없는 군사작전에 대한 인용이나 다른 형태의 군 비밀에 대한 의도적인 위반행위

c) 허위기사나 유언비어의 출판, 배포 특히 민주질서나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 (다음호에 계속)